

대통령령 제 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8조의3제2항 중 “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 이상인”을 “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8조의3(순보유잔고의 공시) ① (생략)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“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<u>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</u> <u>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 이상</u> <u>인 경우를 말한다.</u>	제208조의3(순보유잔고의 공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</u> <u>하나에 해당하는</u>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652